개인택시운전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운전]

개인택시운전이란 택시운전자격을 갖춘 사람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차량 1대를 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콘텐츠는 개인택시를 운전하기 위한 자격요건, 사업면허의 취득, 차량구입, 개인택시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분쟁해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등 개인택시운전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전 1
1. 개인택시운전 개관 4
1.1. 택시운전의 의의 4
1.1.1. 개인택시운전 이해하기 4
2. 개인택시운전 준비 7
2.1. 택시운전자격의 취득 7
2.1.1. 택시운전자격 및 결격사유 7
2.1.2. 운전적성정밀검사 8
2.1.3. 택시운전자격시험 등 10
2.1.4. 관련 교육 12
2.2. 사업면허의 취득 14
2.2.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14
2.3. 차량구입 등 17
2.3.1. 차량구입 및 택시외관 갖추기 17
2.4. 택시운송가맹회사에의 가입 등 20
2.4.1.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 20
2.4.2. 개인택시조합 및 개인택시공제조합의 가입 21
3. 개인택시 운행 23
3.1. 안전한 개인택시운전 23
3.1.1. 승객 태우기 23
3.1.2. 안전운전하기 26
3.1.3. 자동차 안전점검하기 32
3.2. 분쟁해결 등 34
3.2.1. 승객과의 분쟁해결 34
3.2.2. 교통사고의 해결 35
3.3. 재정지원 등 37
3.3.1. 재정지원 등 받기 37
4. 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등 40
4.1. 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40
4.1.1.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 40
4.1.2. 택시운전자격의 정지 및 취소 41
4.1.3. 사업면허의 정지 및 취소 43
4.2.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변경 등 45
4.2.1. 사업계획의 변경 45
4.2.2. 사업의 양도 등 46

1. 개인택시운전 개관

1.1. 택시운전의 의의

1.1.1. 개인택시운전 이해하기

택시운송사업

택시운송사업의 개념

▪ 택시운송사업이란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합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일반택시운송사업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

> ※ **법령용어해설**
>
> ·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종점과 그 기점·종점 사이의 운행경로, 운행거리, 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호).
>
> · 예를 들어, 버스와 같이 정해진 노선을 일정한 배차시간을 가지고 운행하는 경우를 운행계통을 정해 운행한다고 표현합니다.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 택시운송사업은 사업구역을 정해 그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입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

▪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단위로 합니다. 다만, 대형 택시운송사업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특별시·광역시·도 단위로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 그러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 한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택시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 고속철도역, 공항(「항공사업법」에 따른 국제 정기편 운항이 이루어지는 공항만 해당), 항만(「항만법」에 따른 여객이용시설이 설치된 무역항만 해당)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시설이 2개 이상의 사업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사업구역 지역주민의 생활권과 사업구역의 경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사업구역의 지정·변경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공동사업구역

Q. 서울시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승객이 인천국제공항으로 가자고 하는데, 제가 인천국제공항으로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고 인천공항에서 다시 승객을 태우고 서울로 운행을 하는 것은 사업구역 위반인가요?

A. 인천국제공항·김포국제공항지역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부천시, 광명시, 김포시, 고양시에 한정함) 각각의 공동사업구역으로 하므로, 서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도 인천국제공항에서 정차하여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4항]. 다만, 인천국제공항은 공동사업구역으로서 사업 구역 내이므로 시계 외 할증요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종류

▪ 택시운송사업은 운행하는 자동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으로 구분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라목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1. 경형: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길이 3.6m 이하이면서 너비 1.6m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2. 소형: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경형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길이 4.7m 이하이거나 너비 1.7m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3. 중형: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 배기량 1,6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길이 4.7m 초과이면서 너비 1.7m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4. 대형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 운송사업

   √ 배기량 2,000CC 이상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배기량 2,000CC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5. 모범형: 배기량 1,9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6. 고급형: 배기량 2,8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 위와 같은 구분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구분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 관할관청은 소형택시·중형택시·대형택시(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및 모범택시는 각 기능 및 서비스 수준에 따라 운임·요율 수준에 적정한 차이를 두어야 하며, 유류비 등 운송원가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2년마다 조정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4조제5호].

택시운전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합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택시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개인택시운전

▪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정해진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

▪ 따라서 개인택시운전자는 택시운송사업자이면서 택시운수종사자가 됩니다.

일반택시운전

▪ 일반택시운송사업은 정해진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 따라서, 일반택시운전자는 택시회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고용되어 일반택시(법인택시)를 운전하는 택시운수종사자입니다.

2. 개인택시운전 준비

2.1. 택시운전자격의 취득

2.1.1. 택시운전자격 및 결격사유

택시운전자격

운전면허 소지,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출 것

▪ 택시운전은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므로 택시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운전면허는 운행하려는 차량을 운전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1호).

- 택시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8).

> ※ 운전면허 취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자동차 운전면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택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

-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 운전을 직무로 하는 군인이나 의무경찰대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 해당 사업용 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전경력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 √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을 것

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3호).

> ※ 운전적성정밀검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개인택시운전 준비-택시운전자격 취득-운전적성정밀검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할 것

▪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4호가목).

※ 택시운전자격시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개인택시운전 준비-택시운전자격 취득-택시운전자격시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 등

결격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4항제1호).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 위의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4항제2호).

▪ 택시운전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3항제3호).

1.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2.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3.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택시운전 자격시험일 전 3년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 또는 공동 위험행위나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3항제4호,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제5호 및 제5호의2).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경찰청장에게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5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제7호 및 제5항제2호).

2.1.2. 운전적성정밀검사

운전적성정밀검사란?

운전적성정밀검사의 의의

▪ 운전적성정밀검사는 교통사고 경향성과 관계되는 개인의 성격 및 심리·생리적 행동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개인별 결함사항을 검출할 수 있는 일종의 직업적성검사입니다(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 운전적성정밀검사는 검출된 결함사항에 대해 교정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운전자의 적성상의 결함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검사구분 및 대상자

▪ 택시운전을 위한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신규검사, 특별검사 및 자격유지검사로 구분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1호).

▹ 신규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재취업하려는 사람(다만, 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제외)

▹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취업하지 않은 사람(다만, 신규검사를 받은 날부터 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은 제외)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2호).

▹ 중상 이상의 사상(死傷)사고를 일으킨 사람

▹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사람

▹ 질병, 과로, 그 밖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인지 알기 위해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사람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3호).

▹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

▹ 70세 이상인 사람(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함)

> ※ 다만,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① 과거 3년간 중상 이상의 사상(死傷)사고를 일으킨 사람, ②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사람은 제외)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바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 중 의료적성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적성검사(신체 능력 및 질병에 관한 진단을 말함)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5항).

검사신청 및 검사판정기준

검사신청방법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인터넷이나 전화로 사전예약을 하고 검사를 시행합니다.

▪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운전적성정밀검사 신청서(전자문서 포함)와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4항 및 별지 제26호의2서식).

검사판정기준

▪ 운전적성정밀검사는 기기형 검사와 필기형 검사로 구분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 신규검사는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 검사항목의 점수를 요인별로 합산하여 각각 50점 이상을 얻은 때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6조제1항).

▪ 특별검사는 검사항목별 측정결과에 대해 검사자가 실시하는 교정교육을 이수하는 때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6조제2항).

> ※ 검사장 안내 등 운전적성정밀검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검사항목 및 판정기준 등 운전적성정밀검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3. 택시운전자격시험 등

택시운전자격시험

응시자격

▪ 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 본문).

▹ 다만,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않아도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 단서).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매월 1회 이상 택시운전자격시험을 시행하되, 매년 최초의 시험시행일 30일 전까지 그 해의 시험시행계획을 공고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본문).

▹ 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자의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택시운전자격시험의 횟수를 조정하여 공고한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단서).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택시운전자격시험의 일시, 장소, 방법, 과목, 응시절차, 그 밖에 시험시행에 관한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20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본문).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단서).

▪ 위의 공고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이나 간행물 등에 함께 공고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제3항).

자격시험의 실시방법 및 시험과목

▪ 택시운전자격시험은 필기시험방식으로 치러지며, 시험과목은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안전운행 요령, 운송서비스 및 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호가목·나목).

▪ 필기시험에서 총점의 60% 이상을 얻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호다목).

> ※ 시험일정 및 시험장소는 지역별로 정해집니다. 택시운전자격시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시험의 응시

▪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및 별지 제27호서식).

-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 포함)
- 운전면허증
- 운전경력증명서

자격시험의 특례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과목 중 안전운행 요령 및 운송서비스의 과목(아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과목 포함)에 관한 시험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1.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발급한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의 관할구역 밖의 지역에서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려고 택시운전자격시험에 다시 응시하는 경우
2. 택시운전자격시험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4년간 사업용 자동차를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른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경우

▪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위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은 응시원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제3항).

택시운전자격증 및 택시운전자격증명

택시운전자격증의 발급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택시운전자격시험을 실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합격자를 공고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

▪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30일 이내에 운전자격증 발급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택시운전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 및 별지 제28호서식).

▪ 택시운전자격증의 발급 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자격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은 후 택시운전자격증을 발급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제3항 및 별지 제30호서식).

택시운전자격증명의 발급

▪ 택시운전자격증을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증명하는 증표(이하 "운전자격증명"이라 함)를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제1항).

▪ 개인택시 운전자격증명은 운전자격증명발급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제1항 및 별지 제28호 서식).

택시운전자격증 및 택시운전자격증명의 정정 및 재발급

▪ 택시운전자격증 또는 택시운전자격증명의 기록사항에 착오가 있거나 변경된 내용이 있어 정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그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및 별지 제28호서식).

- 운전자격증(명) 정정신청서(전자문서 포함)
- 택시운전자격증 및 택시운전자격증명

▪ 택시운전자격증 및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체 없이 다음의 서류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그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 및 별지 제28호서식).

- 운전자격증(명)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 포함)
- 택시운전자격증 및 택시운전자격증명(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
- 사진 1장

택시운전자격증명의 관리

▪ 개인택시운수종사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운전자격증명을 게시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 개인택시운수종사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운전자격증명을 지체 없이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제출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제2항).

2.1.4. 관련 교육

운수종사자교육

교육 대상자

▪ 운수종사자교육은 신규교육, 보수교육 및 수시교육이 있으며 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2항 및 별표 4의3).

구 분	교육 대상자	교육시간	주기
신규교육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은 제외)	16	
보수교육	1)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4	격년
	2)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33호에 따른 모범운전자에 해당하는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		
	3)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중 2)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4	매년
	4)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8	수시
수시교육	국제행사 등에 대비한 서비스 및 교통안전 증진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운수종사자	4	필요시

※ “법령위반 운수종사자”란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 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 중상 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켰거나,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이어서 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의 대상이 된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

운수종사자 신규교육

Q. 현재 버스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개인택시 운전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경우 따로 운수종사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운수종사자 신규교육은 새롭게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게 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현재 버스운전을 하고 있는 경우 따로 신규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교육과목

▪ 택시운수종사자는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2.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3. 교통안전수칙
4. 응급처치의 방법

5.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

6.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경제운전

7. 그 밖에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구조 및 응급처리에 관한 교육

구조 및 응급처리에 관한 교육 명령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을 받도록 명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

2.2. 사업면허의 취득

2.2.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서류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다음의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별지 제7호서식).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
-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 **※ 법령용어해설**
>
> "관할관청"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는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
>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사업구역별로 나뉩니다. 구체적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서류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특례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범죄신고, 범인체포 협조 등에 따른 신변보호의 필요성이 있거나 택시운송사업의 수급조절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이 아닌 곳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구역의 관할관청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 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그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한 관할관청과 협의하여 이미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폐지하게 한 후 새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

-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 최저 면허기준 대수(臺數),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그 밖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운전 경력, 교통사고 유무, 거주지 등 정해진 기준에 적합할 것

시설 기준

▪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10㎡~13㎡의 차고가 있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표 2).

- 다만, 관할관청은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에 대하여는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차고는 자기 소유이거나, 주차장·차고시설 등을 6개월 이상(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여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인적 기준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사고 운전 경력자여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11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내에서 위의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함)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사람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해 과거 3년 동안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해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호).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 산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이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3호).

※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준에 의해 산출된 누산점수

"벌점"이란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

"누산점수"란 교통법규 위반·교통사고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

※ 누산점수 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할 수 없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않은 사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 사업구역별로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이하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라 함)를 산정해야 합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항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 사업구역별 총 운행거리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의 비율
- 사업구역별 전체 보유대수 중 실제 영업을 한 택시의 평균 비율
- 사업구역별 총 운행거리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의 목표 비율
- 사업구역별 총 운행시간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시간의 목표 비율
- 전체 택시 보유대수[부제(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택시의 운행을 쉬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의 시행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택시는 보유대수에서 제외함] 중 실제 영업을 한 택시의 평균 비율로서 사업구역별 운행형태를 고려한 적정 운행 수준의 가동률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구역에서는 누구든지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하지 않은 사업구역
-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을 요구한 사업구역
- 고시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보다 해당 사업구역 내의 택시의 대수가 많은 사업구역(다만, 해당 사업구역이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음)

택시운전경력자 우대

Q. 만약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발급하면서 택시운전경력자를 일정 부분 우대하는 처분을 한다면, 그 처분은 위법한 것이 아닌가요?

A. 대법원은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발급하면서 택시 운전경력의 업무적 유사성과 유용성 등 해당 면허와의 상관성에 대한 고려와 함께 당해 행정청 관내 운송사업 및 면허발급의 현황과 장기적인 전망 및 대책 등을 포함한 정책적 고려까지 감안하여 택시운전경력자를 일정 부분 우대하는 처분을 하게 된 것이라면, 그러한 차별적 취급의 근거로 삼은 행정청의 합목적적 평가 및 정책적 고려 등에 사실의 왜곡이나 현저한 불합리가 인정되지 않는 한 그 때문에 택시 이외의 운전경력자에게 반사적인 불이익이 초래된다는 결과만을 들어 그러한 행정청의 조치가 불합리 혹은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07.09 선고 2008두11099 판결).

2.3. 차량구입 등

2.3.1. 차량구입 및 택시외관 갖추기

차량 구입하기

세금감면

▪ 취득세 감면

-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에 따른 차령 제한을 이유로 택시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친환경 택시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1항).

▪ 부가가치세의 경감

- 국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9호의3).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로 한정)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공급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3제1항, 부칙<법률 제19936호> 제22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2제1항제2호).

※ 자동차 구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자동차 구입·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택시 외관 갖추기

자동차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개인택시(고급형은 제외)의 바깥쪽에 운송사업자의 명칭, 기호 및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5호).

- 자동차의 종류("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범")
- 관할관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는 제외)
-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의 상호(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
-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면허를 받은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

▪ 택시 윗부분에는 택시임을 표시하는 설비를 설치하고, 빈차로 운행 중일 때에는 외부에서 빈차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조명장치가 자동으로 작동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제1호나목2)라)].

- 다만, 고급형 택시는 택시의 윗부분에 택시임을 표시하는 설비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할 수 있습니다.

※ 택시차량의 광고표시

개인택시운송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의 외부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에 표시해야 합니다.

·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택시운송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 표시등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를 2027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시범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 그 밖의 택시차량의 광고표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택시 내부에 설치해야 하는 사항

▪ 택시[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 안에는 여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택시요금미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제1호나목2)가)].

▪ 또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는 택시요금미터기에서 생성되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운행정보의 수집·저장 장치 및 정보의 조작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제1호나목2)바)].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는 차량의 입·출고 내역, 영업거리 및 시간 등 택시요금미터기에서 생성되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1년 이상 보존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제1호가목13)].

▪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및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요금영수증 발급과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제1호나목2)나)].

▪ 택시 안에는 난방장치 및 냉방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제1호나목2)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개인택시에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의 정면에 에어백을 설치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8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개인택시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합니다(「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제1호).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하며,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 전문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이 경우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 후문).

▪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시기

▸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규 등록하는 차량은 신규등록일에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합니다(「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

※ 신규 등록은 면허 기준이 아닌 차량 출고일(대·폐차 포함)이 기준이 됩니다.

▪ 운행기록장치 장착면제 차량

▸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2002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는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지 않아도 됩니다(「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의4제3호).

▪ 택시 운행정보의 관리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택시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운행기록장치와 택시요금미터기를 활용하여 다음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주행거리, 속도, 위치정보(GPS), 분당 회전 수(RPM), 브레이크신호, 가속도 등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

√ 승차일시, 승차거리, 영업거리, 요금정보 등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택시요금미터기에 기록된 정보

> **※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 포함)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
> · 출·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
> ·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등의 사유로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허가를 받은 경우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를 위반해서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제8호).

2.4. 택시운송가맹회사에의 가입 등

2.4.1.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개념

▪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이란 운송플랫폼을 확보하여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에 의뢰하여 여객을 운송하게 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제2호).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 플랫폼운수종사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8제1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8).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거나 배회하면서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
4.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 결제에 응하지 않는 행위
5.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상태 또는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는 행위
6.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7. 운전 중에 영상표시장치를 이용하여 영상물 등을 시청하는 행위(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 국가비상사태·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 운전 시 자동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 가입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 가입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하여 그 영업표지(상호와 상표를 포함)의 사용권을 부여받아 플랫폼가맹사업자로부터 운송여객을 배정받아 여객을 운송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1제1항).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동일한 차량으로 둘 이상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1제2항).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 신고

▪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정)는 자기의 상호를 소속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으로 변경하여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1제3항).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의 역할

▪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은 플랫폼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2제2항).

1.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운송서비스 및 운송부가서비스의 제공
2.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차량위치의 통지

2.4.2. 개인택시조합 및 개인택시공제조합의 가입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개인택시조합 및 공제조합의 가입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운행 개시 이후에도 개인택시조합 및 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조합의 가입

개인택시조합의 개념

▪ 개인택시조합이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지위 향상을 위해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제1항·제2항).

개인택시조합의 가입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각 시·도별 개인택시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제7항).

개인택시조합의 사업

▪ 개인택시조합은 다음의 사업을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및 제60조).

1.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관리, 외국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사업

3.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교육훈련

4.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개선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6.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대한 공제사업

7. 위의 사업에 따르는 사업

개인택시공제조합의 가입

개인택시공제조합의 개념

▪ 개인택시공제조합이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해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제1항·제2항).

개인택시공제조합의 가입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개인택시공제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제4항).

▹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택시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택시조합에 가입할 것을 전제로 공제가입 및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출처: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홈페이지).

▪ 개인택시공제조합의 조합원은 공제사업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제5항).

개인택시공제조합의 사업

▪ 개인택시공제조합은 다음의 사업을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4조제1항).

1. 조합원의 사업용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에 대한 공제

2. 조합원이 사업용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3. 운수종사자가 조합원의 사업용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자기 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4. 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5.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7. 위의 사업에 따르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3. 개인택시 운행

3.1. 안전한 개인택시운전

3.1.1. 승객 태우기

운송 개시 등

운송 개시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은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안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송시설을 확인받고 운송을 시작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본문).

▹ 관할관청으로부터 수송시설의 확인을 받고 운송을 시작해야 할 기일은 면허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안에 운송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사람의 신청에 따라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단서).

▹ 운송 개시의 기일을 연기하거나 기간의 연장(사업의 일부에 대한 연기 또는 연장의 경우를 포함)을 받으려는 사람은 운송개시기일 연기(운송개시기간 연장)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에 관계 증거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해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 관할관청은 운송개시의 기일 연기 또는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기일을 연기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 “관할관청”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는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나 시·도지사를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

수송시설의 확인

▪ 수송시설의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지 제11호서식).

1. 수송시설 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2.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시설 등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

▪ 위의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운임·요금의 신고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해

신고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

▪ 택시[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과 고급형 택시는 제외]의 운임·요율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3조제3호).

▹ 운임·요율은 기본운임·거리운임·시간운임을 기본체계로 하고 운행형태, 지역적 특성 및 서비스 수준에 따라 구간정액운임제(특정 구간에 대해 택시운송의 대가를 정액으로 수수하는 운임제를 말함), 시간 정액운임제(특정 시간 동안 택시사용의 대가를 정액으로 수수하는 운임제를 말함) 등 별도의 운임체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운임·요율의 세부산정기준, 시계 외 할증, 운행시간대별 할인·할증, 복합할증 등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택시의 기본운임·거리운임 및 시간운임 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12조).

▹ 관할관청이 정한 일정거리까지 운행할 때에는 일정액의 기본운임을 적용합니다.

▹ 기본운임이 적용되는 기본운행거리 이상 운행할 때에는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매 기준거리까지 일정액의 거리운임을 적용합니다.

▹ 기준속도를 정해 기준속도 이하로 주행한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매 기준시간까지 일정액의 시간운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관할관청은 소형택시·중형택시·대형택시(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및 모범택시는 각 기능 및 서비스 수준에 따라 운임·요율 수준에 적정한 차이를 두어야 하며, 유류비 등 운송원가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2년마다 의무적으로 조정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4조제5호).

>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중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고급형으로 구분된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려고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2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3호).

운송약관의 신고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사람은 운송약관을 정해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운송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 운송약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

1. 사업의 종류
2. 운송약관의 적용 범위
3. 운임 및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4. 자동차 안의 휴대품 및 휴대화물에 관한 사항
5. 운송책임과 배상에 관한 사항
6. 면책(免責)에 관한 사항
7. 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이용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각 시·도는 운송약관을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운송약관은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에서 확인해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운송개시 신고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운송개시를 하고 3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행개시를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및 별지 제22호서식).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
- 보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임보험 등) 및 공제 중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신고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자동차등록증의 확인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함)

승객 태우기

택시 승차대

▪ "택시 승차대"란 택시에 승객을 승차·하차시키거나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 또는 구역을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

▪ 관할관청은 택시 이용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택시 승차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 개인택시운수종사자가 택시승차대에서 주차 또는 정차할 때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제1호가목6)가)].

버스전용차로에서 승객을 태우는 경우

Q. 택시를 운행하다 보면 승객이 버스전용차로 구간에서 택시를 타려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버스전용차로에 정차해 승객을 태워도 될까요?

A. 원칙적으로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그러나 예외적으로 전용차선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에는 택시도 버스전용차로로 다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택시 운전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제2호).

택시운전자격증 게시 등

▪ 개인택시운수종사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운전자격증명을 게시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 택시 안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택시요금미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제1호나목2)가)].

※ 택시 내부에 설치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개인택시운전 준비-차량구입 등-차량구입 및 택시외관 갖추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택시운임의 외부표시 등

▪ 관할관청은 이용승객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자동차 외부에 운임을 표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14조제1항).

▪ 택시운임은 관할관청의 검정을 받은 택시요금미터기에 의해 산정된 금액으로 받아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13조제1항 본문).

▹ 다만, ① 운임인상 등으로 택시요금미터기 변경에 많은 기간이 필요한 경우, ② 구간 정액운임제 또는 시간 정액운임제를 적용하는 경우와 ③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요금미터기에 의하지 않고 운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13조제1항 단서).

※ 개인택시부제

· 관할관청은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에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운휴토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은 택시부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9조제1항).

· "개인택시부제"란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를 위해 그룹을 지어 며칠에 한 번씩 택시 운행을 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택시3부제를 시행한다면 3일에 한 번씩 운행을 쉬게 되고, 개인택시5부제를 시행한다면 5일에 한 번씩 운행을 쉬게 됩니다.

관할관청은 경형·소형·고급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이용한 택시에 대해서는 부제를 둘 수 없으며, 택시 수급상황, 국민·택시업계·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부제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부제를 운영·연장하고자 할 경우 2년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택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9조제2항·제3항).

개인택시부제는 시·도별로 3부제, 4부제 등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시부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관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2. 안전운전하기

개인택시운행 시 준수사항

개인택시운수종사자의 구체적 준수사항

▪ 개인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

-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합승하고, 여객의 안전·보호조치 이행 등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합승이 가능합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
-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않는 행위(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함)(「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
-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誘致)하는 행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3호)
-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5호)
-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않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6호)
- 택시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7호의2)
-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7호의3)
- 택시요금미터를 임의로 조작 또는 훼손하는 행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8호)
-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9호)

> ※ 개인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택시운수종사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제1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또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운수종사자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제1항제4호·제5호).

> ※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띠 착용 안내

▪ 개인택시운수종사자는 차량의 출발 전에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음성방송이나 말로 안내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3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의2).

▹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제4항).

관련 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보조금의 사용내역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사람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제2호).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택시운송사업자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습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제3호).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는 차량의 입·출고 내역, 영업거리 및 시간 등 택시요금미터기에서 생성되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1년 이상 보존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제1호가목13)].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하며,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 경우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 본문, 후단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운행기록을 보관하지 않거나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교통안전법」 제65조제2항제10호).

▹ 또한, 이를 위반하여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교통안전법」 제65조제1항제3호의2).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사람은 조사·취득·분석한 교통사고관련자료 등을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교통안전법」 제51조제2항,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및 제39조제5호).

▹ 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관련자료 등을 보관·관리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교통안전법」 제65조제2항제8호).

▪ 교통사고관련자료 등을 보관·관리하는 자는 관계교통행정기관이 해당 교통사고관련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교통안전법」 제51조제3항).

▹ 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관련자료 등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교통안전법」 제65조제2항제9호).

※ 그 밖의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전의 대리운전

대리운전의 요건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운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 포함)의 대리운전 허용기준」).

▸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동일한 질병이나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그 합산기간은 최종의 대리운전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 동안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 개인택시조합에서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을 포함)으로 선출된 경우(다만,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은 전년도 연봉이 4,3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자로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단체의 장(지부장과 지회장을 포함)으로 선출되어 급여를 받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요건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요건을 갖춘 사람만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후단).

대리운전의 신청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하게 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전단 및 별지 제8호서식).

▸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관한 다음의 서류

√ 택시운전자격증명

√ 진단서(질병으로 인한 대리운전의 경우에 한정함)

▸ 대리운전자에 관한 다음의 서류

√ 무사고 운전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8항에 따른 양수자만 해당)

√ 택시운전자격증

√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9항에 따른 양수자만 해당)

대리운전의 종료

▪ 관할관청은 신고한 대리운전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신고인이 제출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반환하고,

대리운전자에게 발급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회수하여 폐기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 대리운전기간 중 그 대리운전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 등이 대리운전을 즉시 종료하게 하고 지체 없이 관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

명의이용 금지

명의이용 금지의 내용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제1항).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名義)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같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제2항).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된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같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제3항).

▪ 위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제3호).

차령제한과 차령연장

차령제한

▪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다음의 연한(이하 “차령”이라 함)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할 수 없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 본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별표 2).

차종	사업의 구분	차령
승용자동차	개인택시(경형·소형)	5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7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9년
	개인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함)]	9년

▪ 차령의 기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

-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 기본차령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다음 구분에 따라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비고 가.)

차종	사업의 구분	대상	차령추가
승용 자동차	개인택시 (경형·소형)	차령기산일이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1년
	개인택시 (배기량 2,400cc 미만)	차령기산일이 2011년 9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 (배기량 2,400cc 이상)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 (환경친화적자동차)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 개인택시의 경우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 등을 고려할 때 위의 차령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령을 더하는 경우에는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비고 나.)

▪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의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현황 및 보급계획,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설치현황 및 설치계획,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하는 시·도의 경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차령은 위의 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비고 다.)

차령연장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해당 시·도의 자동차 운행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다만,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 위의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차동차는 1년마다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 다만, 개인택시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것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에 충당되는 개인택시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는 2년을 차량충당연한으로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 본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4항 및 별표 2의2).

※ "대폐차"란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 본문 참조).

- 다만, 개인택시에 사용되었던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말소등록이 된 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후 다시 등록하는 경우(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에는 차량충당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제3호).

▪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자동차의 제작·조립이 중단되거나 출고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6개월의 범위에서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3항).

※ 그 밖의 안전운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교통·운전』의 <안전하게 도로 주행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3. 자동차 안전점검하기

자동차검사

자동차검사의 종류

▪ 개인택시차량의 소유자(신규검사의 경우 신규등록 예정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 신규검사: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튜닝검사: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 「자동차관리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수리검사: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자동차정기검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자동차 구입·관리』의 <자동차 유지하기-자동차 검사받기-자동차정기검사는 꼭 받아야 해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종합검사

자동차종합검사의 의의

▪ 자동차종합검사란 다음의 검사를 통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 전단).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검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위의 정기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 후단).

자동차종합검사 분야

▪ 자동차종합검사는 다음의 분야에 대해 실시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

-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및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작동 상태 확인을 관능검사(관능검사,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및 기능검사로 하는 공통 분야
- 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내압용기재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로 내압용기재검사를 갈음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제1항 단서).

※ "내압용기"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용기로서 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장착하거나 장착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기(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를 포함)를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제4호의2).

> ※ 자동차종합검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자동차 구입·관리』의 <자동차 유지하기-자동차 검사받기-자동차종합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택시요금미터기의 검정

검정의 종류 및 범위

▪ 택시요금미터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다음 구분에 따른 검정을 받아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5조제1항제3호).

1. 전기식 택시요금미터기

√ 자동차 정기검사를 할 때 실시하는 검정(정기검사 기간 이내에 수리검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정을 받은 것으로 봄)

√ 차령연장을 위한 검사를 할 때 실시하는 검정(차령기간 만료 전 2개월 내에 수리검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정을 받은 것으로 봄)

2. 애플리케이션식 택시요금미터기: 전문검정기관이 애플리케이션식 택시요금미터기의 사용을 시작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검정

▪ 택시요금미터기 검정의 범위는 다음 구분에 따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5조제2항).

1. 전기식 택시요금미터기: 거리를 측정하는 측정장치(변속기에 부착되어 속도를 측정하는 부분)에서부터 요금장치까지

2. 애플리케이션식 택시요금미터기: 위성위치확인시스템으로 파악된 자동차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시간, 거리 및 속도를 계산하는 기능에서부터 요금을 계산하는 기능 및 요금산정기능까지

검정 신청

▪ 택시요금미터기의 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5조제3항 및 4항).

1. 전기식 택시요금미터기: 전기식 택시미터 제작·수리·사용 검정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또는 자동차등록증
2. 애플리케이션식 택시요금미터기: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 제작·수리·사용 검정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의2서식) 및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의 검정기준에 따른 검정항목별 증빙자료

> ※ 그 밖의 자동차검사와 택시요금미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검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검사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4항 본문).

▪ 자동차의 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사람이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제9항제2호).

> ※ 자동차 검사 등 자동차 유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자동차 구입·관리』의 <자동차 유지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 분쟁해결 등

3.2.1. 승객과의 분쟁해결

무임승차

무임승차의 처벌

▪ 택시를 이용한 경우에는 기본운임·거리운임 및 시간운임 등의 기준으로 택시요금미터기에 따른 요금을 운임으로 지불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3조제3호 및 제13조 참조).

▹ 시·도에 따라서는 시계 외 할증, 운행시간대별 할인·할증, 복합할증 등의 할증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에 위반하여 택시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9호).

운행 중 폭행 등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에 대한 처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제1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으로 봅니다.

▪ 위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제2항).

유실물 습득

유실물의 신고

▪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한 택시운전자는 이를 시·도별 개인택시조합의 유실물센터 등에 유실물 습득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차량 오염 등 손해배상

Q.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만취한 승객이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하여 차량이 더러워졌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A. 승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승객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3.2.2. 교통사고의 해결

교통사고 시 조치

신속한 필요조치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개인택시의 고장, 교통사고 또는 천재지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 사상자(死傷者)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유류품(遺留品)을 관리할 것

▹ 택시의 운행을 재개할 수 없는 경우: 대체 운송수단을 확보하여 여객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다만, 여객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그 밖의 조치

√ 신속한 응급수송수단의 마련

√ 가족이나 그 밖의 연고자에 대한 신속한 통지

√ 그 밖에 사상자의 보호 등 필요한 조치

중대한 교통사고의 보고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 자동차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함)가 발생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사고의 일시·장소 및 피해사항 등 사고의 개략적인 상황을 관할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한 후 72시간 이내에 사고보고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 전복(顚覆) 사고
- 화재가 발생한 사고
- 사망자 2명 이상, 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이상 또는 중상자 6명 이상이 발생한 사고

※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조치, 보험 및 법적 책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교통·운전』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제2호가목).

업무상 재해의 인정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다음의 규정을 준용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4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3조).

- 업무수행 중의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
- 행사 중의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요양 중의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
-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
-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출퇴근 중의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보험금의 지급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에 따른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5항).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6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4조 본문).

▹ 다만,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4조 단서).

> ※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산업재해보상보험 I (업무상 재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 II (보험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 재정지원 등

3.3.1. 재정지원 등 받기

세금감면

취득세 감면

▪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에 따른 차령 제한을 이유로 택시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친환경 택시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1항).

부가가치세 감면

▪ 국가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 2024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9호의3).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로 한정)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공급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3제1항, 부칙<법률 제19936호> 제22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2제1항제2호).

유가보조금

유가보조금의 지급

▪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과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제1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4제3호).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12제1항).

1.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연료의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2. 개인택시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실제 주유·충전한 유종(油種)과 다른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한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검사나 질문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6.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른 지급기준에 위반된 경우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국가는 택시에 공급되는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 중 LPG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 이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LPG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1항).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감면받으려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면세를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라 함)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2항).

▪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해당 카드로 LPG를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LPG에 대해 감면액 환급을 신청하여 감면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3항).

▪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신용카드업자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4항 전단).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LPG를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징수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5항).

1.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LPG에 대한 감면액
2. 위 감면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LPG를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그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6항).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계산한 감면액과 감면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징수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8항).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한 경우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3.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이후에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 그 밖의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위한 유가보조금 지급 및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설치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단체 또는 개인택시운수종사자단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또는 제59조)는 개인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사용

▪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합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1. 택시운수종사자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2. 택시운수종사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3.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4. 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등

4.1. 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4.1.1.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

운전면허 관련 벌점제도

"벌점"이란?

▪ "벌점"이란 운전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법규 위반 또는 사고 야기에 대해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가목(1)].

▪ "누산점수"란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야기한 경우 받게 되는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 상계치(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가목(2)].

▪ "처분벌점"이란 구체적인 법규 위반·사고 야기에 대하여 앞으로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가목(3)].

> ※ 그 밖의 운전면허 관련 벌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의 정지·취소사유

운전면허의 정지·취소사유

▪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 포함)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본문).

운전면허의 정지·취소처분

운전면허의 정지·취소처분

▪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그 위반의 경중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운전면허증 등의 보관

▪ 경찰공무원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를 발급하고, 운전면허증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8조제1항제2호).

운전면허증의 반납

▪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제1호·제2호).

▪ 경찰공무원은 이를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사람이 소지한 운전면허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제2항).

▪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이유로 운전면허증을 회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관하였다가 정지기간이 끝난 즉시 돌려주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제3항).

임시운전증명서의 발급

▪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가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1조제1항제3호).

▪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의 경우에는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을 40일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제2항 본문).

▹ 다만,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제2항 단서).

> ※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자동차 운전면허』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1.2. 택시운전자격의 정지 및 취소

택시운전자격의 취소처분 및 정지처분

처분사유

▪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택시운수종사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면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1항).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합승하고, 여객의 안전·보호조치 이행 등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합승이 가능합니다.
4.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않는 행위(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함)

> ※ 택시운전자격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소처분 시 청문

▪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합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9조).

처분에 대한 불복

▪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행정처분을 받은 개인택시운수종사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및 「행정소송법」 제19조 등).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개인택시의 운행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제1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5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않은 사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부정한 방법으로 택시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포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교통사고로 일정한 수 이상(사망자 2명 이상, 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이상, 중상자 6명 이상)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1조)

·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운전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이나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1.3. 사업면허의 정지 및 취소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및 정지처분

처분사유

▪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대리하여 운전하는 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3회 이상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처분유형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관한 행정처분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 사업전부정지: 사업면허 전부의 정지
- 운행정지: 위반행위를 한 택시의 사용정지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소처분 시 청문

▪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합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9조).

처분에 대한 불복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관한 행정처분을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및 「행정소송법」 제19조 등).

>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

-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

  · 면허를 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경우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고 업종의 범위·사업구역·업무범위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는 제외)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에 해당하게 된 경우(다만,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상속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는 제외)

  · 운송개시일을 위반하고 지정한 기일 또는 기간 내에 운송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약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명의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신고없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관리위탁하거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관리위탁한 경우

  · 인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

  ·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再開)하지 않은 경우

  · 1년에 3회 이상 사업용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운송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년에 3회 이상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에 에어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에게 시행하게 하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

  ·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하여 개인택시 운수사업을 하는 등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를 위반한 경우

  · 개인택시 차령(경형·소형 : 5년, 배기량 2,400cc미만 : 7년, 배기량 2,400cc이상 : 9년) 또는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다만,개인택시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 연장 가능)

  · 개인택시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택시벌점제도

택시벌점제도란?

▪ 시·도지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4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
-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

벌점에 따른 처분 및 벌점의 산정기준

▪ 시·도지사는 그 벌점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등의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4항).

▪ 처분관할관청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처분기준 벌점 산정을 실시하고, 최근 2년 동안 벌점의 합이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4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의2제3항 전단).

- 처분관할관청은 이 경우 이미 처분을 한 벌점은 합계에서 제외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의2제3항 후단).
- 처분관할관청은 처분기준 벌점을 산정할 때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1회당 벌점 50점을 경감하고, 최근 5년간 무사고 운전자(최근 2년간 법령 위반건수가 3회 이상인 자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벌점 50점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의2제4항).

※ 택시벌점 부과기준 및 그 벌점에 따른 처분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변경 등

4.2.1.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의 신청 및 제한

사업계획의 변경 신청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과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영업소의 설치·이전(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것만 해당) 및 폐지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및 운송부대시설의 이전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변동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 제한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제5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1호가목).

- 운송 개시의 기일이나 기간 안에 운송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의 변경의 신청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중대한 교통사고 건수가 1건 이상인 경우

운행하는 사업용자동차의 차종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운행하는 사업용자동차의 차종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운행하는 자동차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으로 구분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사업용으로 운행하는 자동차의 차종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

- 예를 들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 변경신고만 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사업용 자동차를 모범택시로 차종을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고, 모범택시를 중형택시로 다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 참조).

4.2.2. 사업의 양도 등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의 제한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업구역 내에 있는 다음의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제2호·제3호).

-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면허를 양수하거나 상속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단서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의 요건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본문).

▪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단서).

-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해당되어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61세 이상인 경우

※ 종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면허를 양도받은 자를 포함)이 그 사업을 양도하고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 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종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날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기 위한 무사고기간에서 제외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1호).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의 절차

▪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2항).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 및 별지 제18호서식).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
- 양도자에 관한 다음의 서류
  -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확인서약서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 √ 택시운전자격증명(택시운전자격증명을 관할관청에 반납하여 폐기되었을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 √ 그 밖에 진단서 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만 해당)
- 양수자에 관한 다음의 서류
  - √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 √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 √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 √ 차고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위반 시 제재

▪ 인가를 받지 않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제6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제한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4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

▪ 다만,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4항 단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신고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아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인 본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상속신고를 하고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 자신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하게 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상속인 등이 대리운전을 즉시 종료하게 하고 지체 없이 관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

▪ 상속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승계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1항 본문).

▹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 대한 상속신고기간은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상 180일 이하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1항 단서).

▪ 상속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별지 제20호서식).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신고서

▹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상속신고의 효과

▪ 상속인이 상속신고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상속인에 대한 면허로 봅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5항).

▪ 상속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지니고 있던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6항).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업구역 내에 있는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상속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제3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휴업·폐업

개인택시운송사업의 휴업·폐업 허가신청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 본문).

▹ 다만, 도로나 다리가 파괴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 단서).

▪ 이 때 휴업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5항).

개인택시운송사업의 휴업·폐업 허가신청서의 제출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전자적 방식의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제38조제2항제3호 및 별지 제21호서식).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서

▹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신청하는 휴업허가의 예정기간이 10일을 초과하거나 폐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

위반 시 제재

▪ 허가를 받지 않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제8호).

> **※ 자동차의 사용정지**
>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휴업·폐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제1항제2호).
>
> · 10일 이내의 휴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제2항).
>
> 시·도지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領置)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제3항).
>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휴업 기간이 끝난 경우 시·도지사는 반납 받은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그 운송사업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제4항).

※ 자동차의 양도 또는 폐차 등 처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자동차 구입·관리』의 <자동차 처분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